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0. 20 선고 2021나37085 판결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전 문

원고, 항소인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주

담당변호사 김찬성

피고, 피항소인 D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여울

담당변호사 김병진, 우혜정, 진성학, 이진학, 윤지원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주현덕, 이성주

변 론 종 결 2022. 9. 15.

판 결 선 고 2022. 10. 20.

제1 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5. 25. 선고 2019가단5218274 판결

주 문

1. 이 법원에서 변경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와 피고 사이의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제1심 공동피고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와 피고 사이에 별지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8. 12. 18. 체결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105,253,291원 및 이에 대한 2019. 8. 27.부터 2019. 9. 25.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2019. 10. 17.까지는 연 9%,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 돈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제1심에서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취소만 구하다가 이 법원에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B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8. 12. 18. 체결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8. 5. 31.경 제1심 공동피고 C(이하 'C'라 한다)의 연대보증 하에, B과 사이에, B이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에 부담하는 대출금채무에 대하여 보험계약자 B, 피보험자 F, 보험가입금액 142,560,000원, 보험기간 2018. 6. 3. ~ 2019. 6. 2.로 정하여

이행보증보험약정(이하 '이 사건 이행보증보험약정'이라 한다)을 하고, 2018. 5. 31.경 F에 대하여 같은 내용의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발행하였다.

나. 원고가 발행한 위 보증보험증권을 담보로, F은 2018. 6. 3.경 B과의 사이에 체결된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에 기한 e-MP 거래에 따른 여신거래약정에 따라 구매자금대출 명목으로 129,600,000원을 변제기한 2019. 6. 2.로 정하여 B에 대출하였다.

다. B은 2019. 6. 2.경 대출금연체로 보험사고가 발생하였고, 2019. 8. 26. 현재 F에 대하여 위 보험으로 담보된 대출금채무 105,253,291원을 연체하여, 같은 날 원고가 F에 위 금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라. B과 피고는 2018. 12. 18. B 소유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억 원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2018. 12. 19. 피고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마. 피고는 2019. 6. 17.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의 B에 대한 구상금 채권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이후 발생한 것이기는 하지만 이 사건 이행보증보험약정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이전에 이미 성립되어 있었으므로, 위 구상금 채권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또한 B은 재정상태가 악화되고 있어 위 구상금 채권이 발생할 사정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무자력 상태에서 피고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피고는 2019. 6. 17.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으므로 원고의 채권에 해당하는 금액의 가액배상을 구한다.

3.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여부

1) 관련 법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지만,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76426 판결 등 참조).

2)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B은 이 사건 이행보증보험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구상금 105,253,29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와 B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체결된 날 이전에 이 사건 이행보증보험약정을 체결하였고, B은 2018. 6. 3.경 원고로부터 발급받은 이 사건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담보로 F으로부터 대출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일 당시에 이미 구상금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는 발생되어 있었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B이 피고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날은 B 직원의 횡령으로 인한 유동성 악화로 보증사고가 발생한 날인 2019. 6. 2.로부터 약 6개월 이전인 2018. 12. 18.인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2018. 12. 18. 당시에 B의 신용상태가 악화되어 있어 가까운 시일 내에 보증사고가 발생할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체결될 당시 원고의 B에 대한 구상금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B에 대한 구상금 채권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에 대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다. 결국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B의 무자력 등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B의 무자력 여부(가정적 판단)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로 말미암아 채무자의 총 재산의 감소가 초래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게 되어야 하는 것, 즉 채무자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보다 많아지거나 채무초과상태가 심화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는 사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4785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사해행위 당시에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는 사실 또는 채무자의 법률행위 등으로 인하여 무자력이 초래되었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채권자가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의 O에 대한 시가감정 촉탁결과를 비롯하여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살펴봐도 B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채무초과인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이 법원에서 변경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위와 같이 변경한다.

재판장 판사 당우증, 판사 최정인, 판사 김창형

별지

1. 경상북도 경산시 I
공장용지 1953㎡
2. 경상북도 경산시 I
[도로명주소] 경상북도 경산시 J
위 지 상
경량철골조 샌드위치판넬지붕 1층 30.24㎡
경량철골조 샌드위치판넬지붕 2층
사무실 및 기숙사, 창고
1층 168.39㎡
2층 62.55㎡
경량철골조 샌드위치판넬지붕 1층 480㎡
경량철골조 샌드위치판넬지붕 1층
기숙사 및 공장
지층 49.66㎡
1층 242.88㎡
3. 경상북도 경산시 K
도로 4㎡
4. 경상북도 경산시 L
도로 24㎡
5. 경상북도 경산시 M
도로 3㎡ 끝.

